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61

발의연월일: 2021. 3. 9.

발 의 자: 정청래·송갑석·양이원영

오영환 • 이규민 • 이수진

임오경 · 전혜숙 · 최혜영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이 그 정보를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것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의 여론이 커지고 있어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이익의 환수가 필요함.

이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제57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4(벌칙)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정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_1 -1	n 1
현 행	개 정 안
제57조(벌칙) ① 제9조제2항을 위	<삭 제>
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②</u> (생 략)	$\underline{\mathbb{O}}$ (현행 제 2 항과 같음)
<신 설>	제57조의4(벌칙) 제9조제2항을 위
	반하여 특정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
	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
	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
	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
	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
	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
	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
	<u> 다.</u>